

2021. 9. 『머물자리론』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[안]

[부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]

부산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『머물자리론(청년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 이자 지원)』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1. 9. 8.
부산광역시장

1. 사업개요

사업명 : 머물자리론(부산청년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 이자 지원사업)

사업대상 :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
만 19~34세 무주택 청년(신혼부부 제외) 세대주

※ 신혼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)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
대상자임. (단,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종료자는 신청 가능)

모집인원 : 200명

접수기간 : 2021. 9. 13.(월) 09:00 ~ 9. 27.(월) 18:00 까지

선정 : 2021. 10. 13.(수) 예정

지원 내용

○ 대출취급은행 : 부산은행

○ 대출최대한도 : 1억 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90% 범위 내)

※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(한국주택금융공사, 부산은행)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,
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(보증)
심사 및 신용평가,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,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.

○ 이차보전금리 : 대출금의 연 1.5%(부산시지원 - 본인 부담 이자 없음)

-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.02% 및 대출 심사와 실행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

대출용도 : 주택임차보증금

대출기간 : 1년 이상 ~ 2년 이내로서 당해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
(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, 최장 4년 이내)

상환방식 : 만기 일시상환방식

- 단, 기한 연장 시 최초대출금의 5% 이상 상환하여야 하며, 신청자격은 최초 신청조건과 동일(단, 소득요건 제외)

2. 자격요건

신청대상자 :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만 19세~34세 청년 무주택 세대주

-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(배우자 포함)
- 신청일 기준 청년 무주택(배우자포함) 세대주
- 본인(부부합산)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
-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의 금액을 지불한 자
※ 은행대출실행(대출금 이체일)은 2021. 11. 1부터 12. 31.까지 가능
- 부·모명의 1주택 이하, 배우자의 부·모명의 1주택 이하인 자

대상주택

-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
(단, 금융기관 제 규정을 충족하여야 함)

※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

-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·월세 전환율 6.1% 이하

<참조>

전월세 전환율 6.1% 적용예시

- 전월세 전환율 = 월세 X 12개월 / (2억원 – 월세보증금) X 100

보증금	2억원	1억 5천만원	1억원	5천만원
월세	0	25만원	50만원	75만원

선정기준 (모집인원 초과 시) : 대출신청금액(50점) + 부산시거주기간(50점)

- 동점자 발생 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선정 (신청인 기준)

- ① 부부 ▶ ② 연장자 ▶ ③ 대출신청금액(↓) ▶ ④ 부산시 거주기간(↑)

□ 제외대상자
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주거), 주택소유자(배우자 포함),
부·모명의 2주택이상, 배우자의 부·모명의 2주택이상인 자
※ 부부공동명의 = 1주택
- 정부(공사·공단·기금 포함)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(배우자 포함)
 - 주택공급 : 행복주택, 전세임대주택, 드림아파트, 사회주택, LH주택사업,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
 - 금융지원 : 디딤돌 대출,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, 주거 안정 월세 대출,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주택 도시기금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
- 부산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(배우자 포함)
 - 부산시 신혼부부, 대학생기숙사비 지원, 청년 월세 지원, 햅살등지, 청년매입임대주택, 부산형 사회주택, 부산 청년 우리집 등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
- '17 ~ '21 머물자리론 사업 참여자, 종료자
- 부·모, 배우자의 부·모와 임대차계약한 자
-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

□ 의무사항

○ 거주지(주민등록) 변경 시 (보증목적물 변경 포함)
○ 기초생활 수급 시
○ 정부(공사·공단·기금 포함) 및 부산시 주거정책 참여 시
○ 주택(배우자 포함) 취득 시
○ 임대차계약 종료 시(대출금 상환 등)



지원종료 신고서 제출 (미제출 시, 지원금 환수 및 지급중단)
--

3. 접수 및 대출 절차

□ 접수절차

- ① 부산청년정책플랫폼(<http://www.busan.go.kr/young>) 접속 ⇒ ② 머물자리론 신청하기 ⇒ ③ 약관동의(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등) ⇒ ④ 신청자 정보 입력 (이름, 주소, 연락처, 임차 주택 정보, 이메일 등) ⇒ ⑤ 구비서류 첨부 제출

※ 구비서류의 경우 스캔 또는 (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)사진 촬영 파일 업로드

□ 보증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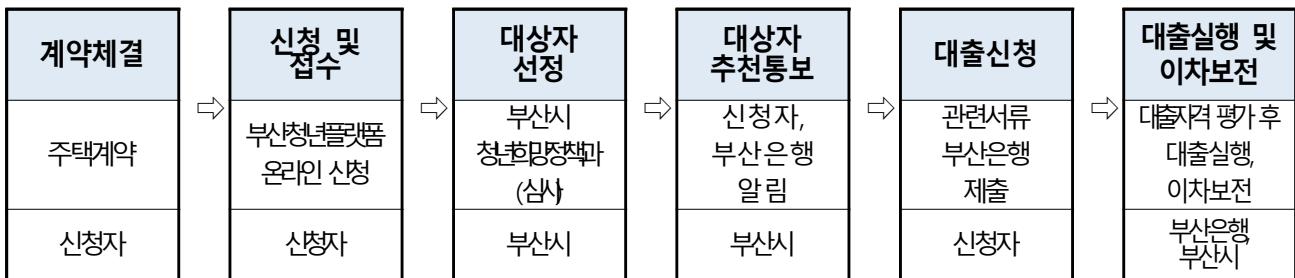
-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
※ 보증 신청에 따른 보증료(대출보증금액의 0.02%)는 신청인 부담

□ 머물자리론 신청(부산청년플랫폼) 시기

- 신규임차계약(전세 입주 시 임차보증금 부족분이 필요할 경우)
 - 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개월 이후인 경우
※ 신규임대차계약으로 잔금지급일 전, 전입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
- 신규임차계약(전세 입주 후 대환자금이 필요할 경우)
 - 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1개월이내인 경우
- 갱신임차계약(임차보증금 증액, 대환자금이 필요할 경우)
 -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

※ 선정 후, 은행 방문 가능 일정과 “필요 서류” 및 상담내용은 개인별 상이하므로 임차물건지와 가까운 협약은행점으로 문의

대출절차 (대출신청 : 대출실행일(잔금지급일) 최소 15일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)



※ 부산광역시 자격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(소득) 심사 및 신용 평가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4. 선정 및 발표

- 일시 : 2021. 10월 셋째주(예정) 선정자 공고(※심사기간 2주 정도 소요)
- 방법 : 문자 알림 및 부산청년플랫폼(<http://www.busan.go.kr/young>)에서 확인 가능

5. 제출서류

□ 공통서류(공고일 이후 발급분)

- ① 지원신청서(부산청년플랫폼(<http://www.busan.go.kr/young>), 온라인 작성)
- ②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(온라인 동의)
- ③ 청년정책문자알림 동의서(온라인 동의, 선택사항)
- ④ 사업 참여자 유의사항(온라인 동의)
- ⑤ 주민등록등본(본인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)
 - (온라인) "정부24" www.gov.kr or (오프라인) 동행정복지센터
- ⑥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내역 포함)
 - (온라인) "정부24" www.gov.kr or (오프라인) 동행정복지센터
- ⑦ 가족관계증명서(본인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)
 - (온라인) "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" www.efamily.scourt.go.kr or (오프라인) 동행정복지센터
- ⑧ 임대차계약서(본인외 주민번호 미포함)
 -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서 추가제출
- ⑨ 본인신용정보조회서(금액가리고 제출)
 - (온라인) "한국신용정보원" www.credit4u.or.kr
- 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or 3부(부·모)
 - ※ 오프라인 발급분(동행정복지센터)만 인정, 온라인·무인민원발급기 발급분 불가
 - 재산세, 전국, 2020~2021년 기준 발급
 - 주택 미소유 시(1부) : 주택에 대한 "전국 과세사실 없음" 증명서
 - 1주택 소유 시(3부) : 주택 소유지역의 "과세내역" 증명서
 - 주택 소유지역 외(해당시도내 타지역) "과세사실 없음" 증명서
 - 주택 소유지역 외(타시도) "과세사실 없음" 증명서

□ 배우자 추가 제출서류

①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(배우자 - 서면동의)

② 혼인관계증명서

- (온라인) "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" www.efamily.scourt.go.kr or
(오프라인) 동행정복지센터

③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)

- (온라인) "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" www.efamily.scourt.go.kr or
(오프라인) 동행정복지센터

④ 본인신용정보조회서(배우자, 금액가리고 제출)

- (온라인) "한국신용정보원" www.credit4u.or.kr

⑤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or 3부(배우자의 부·모)

※ 오프라인 발급분(동행정복지센터)만 인정, 온라인·무인민원발급기 발급분 불가

- 재산세, 전국, 2020~2021년 기준 발급
- 주택 미소유 시(1부) : 주택에 대한 "전국 과세사실 없음" 증명서
- 1주택 소유 시(3부) : 주택 소유지역의 "과세내역" 증명서
 - 주택 소유지역 외(해당시도내 타지역) "과세사실 없음" 증명서
 - 주택 소유지역 외(타시도) "과세사실 없음" 증명서

6. 기타(유의) 사항

-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120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☎ 051)120
- “머물자리론”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받으며, 허위·착오·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협조 바랍니다.
- 머물자리론 사업 참여자는 종료 후 재참여가 불가합니다. * 생애 1회 참여
- 선정된 대상자는 소득 관련 서류 등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협약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 심사 과정을 통해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대출지원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금융기관 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(한국주택금융공사, 부산은행)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,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(보증)심사 및 신용평가,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,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주거) 및 청년주거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, 머물자리론 융자 취소 및 이자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선정 후 유효기간 이내 대출 미실행시에는 선정이 취소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
- 사업참여 대상자로 선정되신 후에도 자격제외(지원중단) 대상으로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되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셔야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사업 대상에 선정된 후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다음의 ‘사업 대상 선정 시 유의사항’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.

〈 사업 대상 선정 시 유의사항 〉

1. 당초 사업신청내용 중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2. 용자 취급 금융기관(이하 “부산은행”이라 한다.)의 용자승인이 결정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용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부산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.
3. 동일 사업으로 중복하여 용자추천을 받을 수 없으며, 용자대상자 추천 후 유효기간 이내 금융기관 대출 미이행시 향후 용자 추천이 제한됩니다.
4.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부산시 및 부산은행에 제출해야 하며, 부산시 또는 부산은행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.
5. 용자추천 및 이차보전금 지원의 취소 또는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| |
|--|
| 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|
|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|
| ③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 |
| ④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|
| ⑤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거나 사업공고에서 정한 임대차계약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이용중인 경우 |
| ⑥ 본인(배우자 포함)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|
| ⑦ 기초생활수급자, 정부나 지자체의 타 주거 지원정책 참여자, 주택도시기금의 금융지원을 받는 자,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사업공고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|
| ⑧ 대출(보증)기한 연장 시 만34세를 초과, 본인(배우자 포함)의 부모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|
| ⑨ 그 외 금융기관 제 규정상 대출·보증제한대상 또는 기한연장이 불가한 경우 |

6. 이차보전금 지원이 취소 또는 중단되거나 만기연장이 거절될 경우 이차보전금 환수 및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. 상환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신용관리정보 등재, 채권회수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.
7. 제5조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용자추천을 취소하고 용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수금 및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 - ① (조건을 위반한 경우)
기 지원된 용자금에 대하여 자격제외(지원중단)일로부터 부산시에서 지원한

이차보전금 전액을 환수금으로 지급합니다.

② (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경우)

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 대출개시일로부터 부산시에서 지원한 이차보전
금 전액과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의 법정이자를 위약금*으로 지급합니다.

* 위약금 = 부산시 이차보전금 지원금액 + (이차보전금 × 법정이자 × 지원일수 ÷ 365일)

8. 머물자리론 사업참여자는 향후 부산시의 청년 관련 정책의 입안과 평가과정(포럼,
토론회, 온라인 설문 조사 등)에 연간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.